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3324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위탁사무명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2조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 제13조, 제21조

○ 추진 필요성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7. 1. 31. 만료 예정
- 복지서비스의 지속 제공과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 추진 필요

3. 위탁사무 내용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사례관리
- 서비스 제공(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무료급식 등)
- 지역조직화사업
- 위탁시설·설비·비품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4. 위탁시설 개요

구 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소재지	하남시 덕풍천서로 9
규 모	연면적 6,267.81㎡, 본관 및 별관(지하 1층~지상 4층)
정 원	18명

5. 민간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기간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2027. 2. 1. ~ 2032. 1. 31. (5년)

6. 수탁자 선정방식

-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이사장 김정오)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재계약 심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미만(100점 만점)일 경우 선정 제외 및 공개모집 절차 이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298,224천원(전액 시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액(본예산)	산출근거
계	1,298,224	
하남시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1,298,224	- 인건비(18명) 1,121,670천원 - 운영비 158,340천원 - 시설비 13,214천원 - 사업비 5,000천원

○ 5개년 예산계획: 7,374,412천원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총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계	7,374,412	1,308,194	1,386,686	1,469,887	1,558,080	1,651,565
인건비	6,491,642	1,131,640	1,210,132	1,293,333	1,381,526	1,475,011
운영비	791,700	158,340	158,340	158,340	158,340	158,340
시설비	66,070	13,214	13,214	13,214	13,214	13,214
사업비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산출근거: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 연 6% 증가율 적용, 비인건비 동결(변동 가능)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함
- 민간의 전문인력과 복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및 지역조직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기존 수탁기관은 복지관 운영뿐 아니라 위탁시설의 안전점검, 설비 및 비품관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성과평가 결과와 사업의 연속성, 종사자 고용안정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이 적정함

9. 성과평가 결과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 및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 평가위원 3인(복지정책과장,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타 지역(서울시) 사회복지관 관장)의 성과평가 결과
→ 평균점수: 97.5점(100점 만점)
-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는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됨

10.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6. 11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6. 12월 중

11. 관련 법령 및 조례 : 붙임 1

관련 법령 및 조례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등)

- ① 사회복지관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7.10.13>
- ③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위탁기간)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4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아닌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2., 2023.5.1.>
2.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신설 2023.5.1.>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5.1.>
4.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5.1.>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5.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개정 2023.5.1.>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 동의 등)

-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5.1.>
-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23.5.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개정 2023.5.1.>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개정 2023.5.1.>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개정 2023.5.1.>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개정 2023.5.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재계약) <개정 2023.5.1.>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12., 2023.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사무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